

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·휴일 진료기관 육성 변경계획

달빛어린이병원 육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약지 소아 야간·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한 변경계획임

1 사업근거 및 배경

□ 추진근거

-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4조(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원 사업)
- 2024년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대책 추진계획 수립 (보건의료과 35784호, '23.11.24)

□ 추진배경

- 소아 경증환자를 위한 소아 야간·휴일 진료기관 부족으로 상급 응급 의료기관 환자 쏠림현상 심화

- ▶ 소아청소년과 병·의원 685개소('23. 8.월기준) 중 야간진료 의료기관 22개소(3.2%)
- ▶ 응급의료기관 소아중증환자(Level1~2) 비율은 권역응급의료센터(8개소) 4.5%,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기관(66개소) 1.6%임

-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인력 채용, 운영 유지 등의 문제로 달빛어린이 병원*의 최소운영시간 충족하기 어려워 신청 기피

*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현황

- ▶ 지정권자 : 도지사 / 지정현황 : 21개소

※ 남부 12(수원, 화성2, 오산2, 김포3, 부천, 평택, 용인, 김포 / 북부9(의정부3, 고양2, 파주, 남양주, 양주, 포천)

- ▶ 운영형태 : 일반운영(주7일), 일부요일운영 주3일이상, 토일 포함) 등

운영시간	평일	토·일·공휴일(명절 포함)
표준운영시간	18시 ~ 24시	09시 ~ 22시
최소운영시간	18시 ~ 23시	10시 ~ 18시

- ▶ 지원내용 : 운영시간별 운영비, 건강보험 수가(야간진찰료 +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관리료)

⇒ 달빛어린이병원 육성을 위해 소아 야간·휴일 진료기관 진료비를 추가 지원하여 도 내 소아진료 인프라 확대 구축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·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
- 소요예산 : 2,000백만원(도비 30%, 시군비 70%)
- 사업규모 : 10개소 ※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
- 사업기간 : '24. 3. 1. ~ '24. 12. 31. ※ 달빛어린이병원 육성 위해 한시적 지원
- 사업내용 :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·휴일 진료기관 운영비 지원
 - 지원내용 : 최소 운영기준 모두 충족 시 시간당 10만원 지원

운영시간	평일 야간	토·일·공휴일(명절 포함)	비고
표준 운영시간	18시~23시	1일 8시간 이상	
최소 운영시간	18시~21시	1일 6시간 이상	
주당 최소 운영일 수	3일	1일	

- 지원대상 : 보건소에서 추천한 소아 야간·휴일 진료기관*
 - 지원대상 선정 우선 순위
 - 1순위 :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보건소 소재 소아 야간·휴일 진료기관
 - 2순위 :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어 있는 보건소 중 보건소에서 추천한 소아 야간·휴일 진료기관

* 진료기관 :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(단, 소아 야간·휴일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, 소아청소년 대상 진료 가능 의료기관(예시: 내과, 이비인후과, 가정의학과 등)도 가능]

- 보건소별 추천 가능 개소수 : 1개소*

* 시·군(보건소별) 1개소 참여 원칙이나, 만 18세 이하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경우 1개소 추가 참여 가능
 - 단,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18세 이하 인구 및 의료기관 분포 등 지역적 요건을 고려하여 시·군 자체 심의(검토) 후 별도의 추가 추천 가능(시·군 심의(검토)자료 심사 후 도에서 지원대상 최종 확정)

□ 변경계획

○ 변경사유

- 응급실 소아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아 야간·휴일 진료기관의 참여기관 추가 육성 필요

○ 변경사항 : 지원내용의 의료기관 최소 운영기준 변경

- 운영기준 변경

구분 운영기준	변경 전		변경 후(확대)		비고
	평일 야간	토·일·공휴일 (명절 포함)	평일 야간	토·일·공휴일 (명절 포함)	
표준운영기준	주3일 18시~23시	주1일 8시간 이상	주3일 18시~23시	주1일 8시간 이상	
최소운영기준	주3일 18시~21시 까지 운영	주1일 6시간 이상 운영	① 주 3일 운영하는 경우 18시~21시까지 운영 (휴게시간 미포함) ② 주 5일 운영하는 경우,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21시 까지 운영 시 참여 가능 ※ 단, 필수 진료시간 (19시~21시) 준수, 휴게시간은 운영비 지원 불가 예시) 주 5일 18시~21시 운영, 휴게시간 18시~19시인 경우 1일당 2시간 운영비 지원 (주당 10시간)	<u>주 1일 6시간 이상 운영 시, 초과 운영일수 및 시간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가능</u> (휴게시간 미포함) 예시) 토요일 09시~16시(6시간), 일요일 09시~13시(4시간) 운영 시 총 10시간 운영비 지원 가능	

지원금 예시	< 최소 운영시 > 평일 3일 총 9시간, 휴일 1일 총 6시간	< 표준 운영시 > 평일 5일 총 25시간, 휴일 2일 총 16시간
	1. 주당 : 150만원 - 평일 3시간×3일×10만원 = 90만원 - 휴일 6시간×1일×10만원 = 60만원 2. 연간 : 150만원×43주 = 6,450만원	1. 주당 : 410만원 - 평일 5시간×5일×10만원 = 250만원 - 휴일 8시간×2일×10만원 = 160만원 2. 연간 : 410만원×43주 = 17,630만원

□ 추진 체계

○ 기관별 역할

구분	역할	비고
경기도	-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지도·감독 총괄 - 사업 예산 편성 - 사업 지침 수립 안내	
시·군 (보건소)	- 사업의 행정적·재정적 관리 및 지원 · 관내 의료기관에 사업안내 및 참여신청 접수 · 사업계획서 사전평가 및 추천 · 참여 의료기관 현장점검 및 실적조사 · 누리집(홈페이지) 등 사업 참여기관 홍보	
참여기관 (의료기관)	- 사업신청서 제출 - 평일야간 및 휴일 소아경증환자 진료(약속된 진료시간 준수) - 소아환자 중증도에 따라 상급의료기관 전원 안내 - 월별 진료실적 제출(관할 보건소)	

□ 참여기관 준수사항

※ 미준수 시 사업 중단 및 보조금 환수 조치

○ (진료시간) 의료기관별 약속된 진료요일 및 진료시간 준수

- 진료시간은 환자접수 시각 기준이며, 대기인원이 많다고 하여 운영 시간 내 방문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음

※ 단, 대기인원에 따라 진료시간이 1시간 이상 초과된 경우 시·군(보건소)에서 증빙자료 확인 후 초과된 시간만큼 추가 지원 가능

○ (보조금) 보조금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집행

○ (실적) 참여기관은 관할 시·군(보건소)에 월별 진료실적 보고 [붙임 1]

○ (휴진) 참여기관은 약속된 일수 중 1년에 10일 이내로 휴진 가능하며, 휴진 시 최소 1주일 전 시·군(보건소)에 알림 및 병원 내, 포털검색창 안내문 게시

※ 시·군(보건소)은 시·군(보건소) 홈페이지 게시 및 도에 보고 [붙임 2]

○ (변경) 참여기관은 부득이하게 약속된 진료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주일 전 시·군(보건소)에 알림 및 병원 내, 포털검색창 등 안내문 게시

※ 시·군(보건소)은 사업계획서(예산) 변경 승인 후 도로 보고 [붙임 2]

○ (중단) 참여기관에서 중단을 희망할 경우 최소 1개월 전 시·군(보건소)에 알림 및 시·군(보건소)은 이를 공문으로 도로 보고

※ 시·군(보건소)은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도로 반납

○ (기타) 사업에 대한 점검, 모니터링,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

□ 행정사항

○ 운영 지원(보조금)

- 의료기관 운영 상황 확인 후 ‘월별’ 또는 분기별’ 지급(시·군)

※ 의료기관 진료 대기인원에 따라 약속된 진료시간이 1시간 이상 초과된 경우 초과된 경우 증빙자료 확인 후 초과된 시간만큼 추가 지원 가능

- 경상보조 성격으로 사업 운영에 따른 인력의 인건비 또는 의료소모품 구입비로만 사용 가능 ※ 자산취득 성격의 의료장비 등의 구입은 불가

-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월 불가

- 보조금 교부 전이나, 사업시작일(‘24.3.1.) 이후 운영실적의 경우 예산 소급 지원 가능

※ 단, 4분기 운영비의 경우 사업기관별 12월 운영계획을 반영해 12월 중 집행하고, 반드시 다음 연도(1월 초) 실제 운영실적을 확인 必

○ 운영점검 및 실적 관리 : 연 2회(상·하반기)

- 현장점검 : 약속된 진료시간 준수 여부 등 확인(시·군)

※ 단, 진료시간 미준수 및 실적 미제출 의료기관 대상 추가 현장점검(모니터링) 실시

- 실적조사 : 전체 · 야간 시간대별 · 월별 진료환자 수 확인

- 점검결과 및 실적 제출 [붙임1, 3] : 시·군 → 경기도

※ 제출시기 : 상반기(7월 초), 하반기(다음연도 1월 초)

○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결과 환류 : 연 2회(상·하반기)

- 운영 점검실적 및 점검결과 모니터링 후 결과 환류 · 반영(경기도)

3

기대효과

-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아경증환자 야간·휴일 진료기관 운영으로 아이 및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진료체계 구축
- 소아경증환자의 상급 응급의료기관 쏠림현상 완화로 응급실 진료 과밀화 해소 및 응급의료 질 향상

4

향후계획

- 변경계획 안내 및 참여 희망 의료기관 수요조사(3차) : ' 24. 5월 중
-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결과 환류 : 반기별